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 주요 변경사항

2024. 9. 1. 시행

1. 교내발령자 직급별 월기준금액 인상 및 비전임교원/전임연구원 급여상한액 인상

1) 교내발령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월기준금액 인상
2) 교내발령자(비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의 급여상한액 인상
3) 비발령자(연구원-전문학사) 졸업연차별 월기준금액 신설
4) 연구비재원 전임연구원의 학력조건 변경 (석사학위 이상 → 전문학사 학위 이상)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연구원직급</th><th rowspan="2">학위과정명</th><th rowspan="2">졸업연차
(학위취득후 연차)</th><th colspan="2">월기준금액(단위:원)</th></tr>
<tr><th>기존</th><th>변경</th></tr>
<tr><td rowspan="6">교내
발령자</td><td>교수</td><td>-</td><td>-</td><td>8,500,000</td><td>9,500,000</td></tr>
<tr><td>부교수</td><td>-</td><td>-</td><td>7,000,000</td><td>8,000,000</td></tr>
<tr><td>조교수</td><td>-</td><td>-</td><td>6,000,000</td><td>7,000,000</td></tr>
<tr><td>HK교수</td><td>-</td><td>-</td><td colspan="2">실급여에 따름(변동없음)</td></tr>
<tr><td>비전임교원</td><td colspan="2">급여상한액 (기존) 5,500,000원
→ (변경) 6,500,000원</td><td colspan="2">실급여에 따름(변동없음)</td></tr>
<tr><td>전임연구원
(전문학사학위이상)</td><td colspan="2">급여상한액 (기존) 5,500,000원
→ (변경) 6,500,000원</td><td colspan="2">실급여에 따름(변동없음)</td></tr>
<tr><td rowspan="3">비발령자</td><td rowspan="3">연구원
(전문학사)</td><td>전문학사</td><td>11-99</td><td>-</td><td>4,800,000
(신설)</td></tr>
<tr><td>전문학사</td><td>8-10</td><td>-</td><td>2,400,000
(신설)</td></tr>
<tr><td>전문학사</td><td>0~7</td><td>1,600,000</td><td>1,600,000
(변동없음)</td></tr>
</table>

2. 2024년 간접비 고시비율 반영: 직접비의 24.69%

-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명시

3. 회의비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 인상

- 청탁금지법 음식물 허용 가액 개정사항 반영

기존	변경
1인당 30,000원 이내	**1인당 50,000원 이내**

4. 야근(특근)식대 1인당 집행한도(상한액) 인상

기존	변경
1인당 12,000원 이내	**1인당 20,000원 이내**

5, 국내외 초청연사의 국내 체재비 국내/국외 구분 삭제 및 체재비 지급기준 통일

<변경 전>

구 분		교통비(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가 등급	국내	전임교원 국내여비 기준에 따름	100,000	30,000
	국외	실비(항공-비즈니스석)	실비(스탠다드룸)	
나 등급	국내	비전임교원 국내여비 기준에 따름	80,000	30,000
	국외	실비(항공-이코노미석)	실비(스탠다드룸)	

<변경 후>

구 분	교통비(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가 등급	**실비(항공-비즈니스석)**	**실비(스탠다드룸)**	**30,000**
나 등급	**실비(항공-이코노미석)**	**실비(스탠다드룸)**	**30,000**

6. 항공사 기내식 제공에 따른 '국외여비 편도 비행시간 기준 식비 감액 기준' 추가

편도 비행시간	식비 감액
비행시간 4시간이상 ~ 8시간 미만	편도 1식(왕복 2식) 차감
비행시간 8시간 이상	편도 2식(왕복 4식) 차감

7. 기타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및 연구책임자 간담회 의견 반영)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상기준(하한선) 추가 (본 지침의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준인건비의 10%이상 지급해야함)
2) 학생인건비 학기(6개월)단위 입력 및 지급금액 변경사유 추가 (변경사유: 과제협약변경, 학생연구자의 학적변동, 개인사유, 질병 등으로 인한 업무불가, 업무량 변동)
3) 소모품 구매 일반원칙 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소모품 결제 건당 300만원 미만 집행시, 물품 검수는 인수자 서명으로 대체)
4) 회의비 부적정 집행 사례 '식후 장소를 이동하여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개인 기호성 다과비 처리 불가' 삭제 (식사 전후 상관없이 다과 + 식사비 합계금액이 1인당 상한액 초과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
5) 연구재료비 부적정 집행 사례 '동일 업체에서 단기간 건당 300만원 미만으로 수시결제하여 동일업체 총 구매금액이 3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절차를 피하고자 임의 분할 발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정기감사 지적사항)
6) 여비(교통비) 항공운임 중 '좌석지정에 따른 추가운임 집행 가능' 문구 추가 (단, 전임교원 및 본교 소속 외 공동연구원이 일반석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
7) 여비 지급시 '본교 소속 명예교수, 석좌교수, 연구특임교수 여비 적용 기준' 추가 (전임교원 및 본교 소속 외 공동연구원 직급의 여비 기준 적용)
8) 여비 부적정 집행 사례 '출장지에서 사용한 택시비, 주차요금' 추가

9) 연구실 운영비 사용기준(연구실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항목) 추가

구 분	사용기준 및 해당 품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①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문서세단기, 빔프로젝트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②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리비 ③ 소프트웨어 :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도입기한 제한 제외: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집행 가능
사무용품비	① 토너, 프린터 용지, 문규류 등 ②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모품 : RAM, Graphic card, 쿨러 및 파워 unit, 케이블, 마우스, 키보드, 웹캠, 헤드셋, 스피커 등 ③ 데이터 저장용 부품 : HDD (PC용, 서버용, 외장형), SSD(Solid State Disk), USB 메모리, Micro-SD 등 ※ 구입하고자 하는 부품의 용도에 따라 사무기기 컴퓨터 구동을 위한 것이라면 연구활동비로 집행
소모성 비용	종이컵, 물티슈, 화장지, 멀티탭 등 공용물품 및 방역물품 등
연구실환경 유지비	① 냉난방기기 : 냉장고, 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난로 등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은 불인정 ②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정수기, 스탠드, 청소도구,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③ 책상, 의자, 캐비넷 등 ④ 임대할 경우 렌탈료, 필터 교체비 등